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장기고배당40 증권투자자신탁[채권혼합]

- 변경 사항 : ① 주식 책임운용인력 변경 (한규민 → 현혜정)
 ② 미국 국적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제한 삭제
 ③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 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
 ⑥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22. 10. 7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안내	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<u>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</u>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1. 9. 30. 기준	2022. 8. 31. 기준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2022. 4. 21. 기준
운용전문인력	주식 책임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한규민 2021. 10. 31. 기준	현혜정 2022. 10. 31. 기준

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개정사항 반영	시행령 17 시 이전(경과후): 제 2(3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	시행령 17 시 이전(경과후): 2(3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개정사항 반영	시행령 17 시 이전(경과후): 제 3(4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4(5)영업일에 지급	시행령 17 시 이전(경과후): 3(4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(5)영업일에 지급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신 설>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2022.06.30 : 자투자신탁 추가 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트러스톤 TIF 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			
5. 운용전문인력	주식 책임운용인력 변경	한규민	현혜정
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1. 10. 31. 기준	2022. 8. 31. 기준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[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운 용전문인력]	주식 책임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트러스트장기고배당증권모 투자신탁[주식] <u>한규민</u> 2021. 10. 31. 기준	- 트러스트장기고배당증권모 투자신탁[주식] <u>현혜정</u> 2022. 8. 31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주식 책임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한규민</u> 2021. 10. 31. 기준	<u>현혜정</u> 2022. 8 31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주식 책임운용인력 변경 최근	[주식책임운용역] <u>한규민 : 2020.04.14~현재</u> <u><신 설></u>	[주식책임운용역] <u>한규민 : 2020.04.14~</u> <u>2022.10.06</u> <u>현혜정 : 2020.10.07~현재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[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운 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	책임운용인력 변경 최근	- 트러스트장기고배당증권모 투자신탁[주식] <u>한규민 : 2020.04.14~현재</u> <u><신 설></u>	- 트러스트장기고배당증권모 투자신탁[주식] <u>한규민 : 2020.04.14~</u> <u>2022.10.06</u> <u>현혜정 : 2022.10.07~현재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주 요 투자 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트러스트장기고배당증 권모투자신탁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가) (생 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 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- 트러스트장기고배당증 권모투자신탁 <u><삭 제></u>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 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<u>금 용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 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 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</u>

			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		① ~ ⑤ (생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	오기정정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3) 어음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3) 양도성예금증서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트러스톤장기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에 따른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	- 트러스톤장기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 <u>〈삭제〉</u> <u>〈삭제〉</u>
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]		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</u>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		①~⑤ (생략) (나) (생략)	①~⑤ (현행과 같음) (나) (현행과 같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	〈신설〉	<u>증권대여위험 :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,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</u>
나. 특수위험			

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증권차입위험 :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, 차입자산을 공매도(short selling)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,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(매도가-매수가)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</p>	<p>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	<p>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	<p>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지난 후 1 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	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</p>	<p>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 제한 삭제</p>	<p>3)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 :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국적인 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.</p> <p>4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 시[오후 5 시]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7 시[오후 5 시]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</p>	<p><삭 제></p> <p>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 시[오후 5 시]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7 시[오후 5 시]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7시[오후 5시]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</p>	<p>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7시[오후 5시]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</p>

		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	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
		② 17시[오후 5시]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	② 17시[오후 5시]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<u>2021. 9. 30. 기준</u>	<u>2022. 8. 31. 기준</u>
	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신 설>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u>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951,360 원입니다.</u> <u>* 직전 회계연도:</u> <u>2020.10.22 ~ 2021.10.21</u> <u>*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: 주식·채권·수익증권·파생상품·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(단, 세 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)</u>

	(신 설)		주 6)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, 직전 회계연도에 금융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* 직전 회계연도 : <u>2020.10.22 ~ 2021.10.21</u>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2. 4. 21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2. 4. 21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2. 4. 21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1. 9. 30. 기준</u>	<u>2022. 8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3 기(2020.12.31)</u> <u>제 22 기(2019.12.31)</u>	<u>제 24 기(2021.12.31)</u> <u>제 23 기(2020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1. 10. 31. 기준</u>	<u>2022. 8. 31. 기준</u>
3. 집합투자재산 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주요업무 (생략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	(1) 주요업무 (현행과 같음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
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사명 변경	<u>KIS 채권평가주식회사</u>	<u>KIS 자산평가주식회사</u>

가. 회사개요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관련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제 5 영업일</u>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5 영업일</u>
가. 수익자총회 등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 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 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 니다. ① ~ ② (생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 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 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 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 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서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 행령 제81조제3항제1호 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 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 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 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나. 임의해지		(2) ~ (3) (생략)	(2) ~ (3) (현행과 같음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 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 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 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나. 수시공시			

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

① ~ ⑦ (생략)

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
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
⑩ (생략)

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

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**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**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
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(**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**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
⑩ (현행과 같음)